

투자 위험 등급
6 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대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 B2 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 B2 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 B2 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대신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2.07.12.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08.03.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 B2 호

[펀드코드 : 39161]

투자 위험 등급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대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전용 MMF**로, MMF 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 장부가로 기준가격을 산정하므로 이에 따른 시가와의 괴리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 B2 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법인전용 MMF 로, 주로 단기금융 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또한, 시장위험 회피를 위해 당해 투자신탁재산에서 편입하고 있는 자산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60일 이하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분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 MMF),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및 비용 (단위:%)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0.360	0.310	0.200	0.3652	37	77	118	205	463
	(주 1)‘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 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해당집합투자기구는 A,Ae,Ce 클래스가 없어, 투자시 C 클래스와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3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21.07.13 ~ 22.07.12	최근 2 년 20.07.13 ~ 22.07.12	최근 3 년 19.07.13 ~ 22.07.12	최근 5 년 17.07.13 ~ 22.07.12	설정일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2003-11-17	0.85	0.59	0.74	0.96	2.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	2013-05-21	1.13	0.87	1.01	-0.78	0.42				

	비교지수(%)	-	1.15	0.84	0.95	1.19	2.53
	수익률 변동성(%)	2003-11-17	0.05	0.05	0.05	0.06	0.09

(주 1) 비교지수 : (CD 금리 + 5*CALL)/6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MMF, 단위 : %)				운용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정관옥	1968	책임(상무)	6개	7,802억	-	-	1.22	0.96	20년 7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MMF 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

		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 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sset.daishin.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업자	대신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69-3449 / 인터넷 홈페이지 : asset.daishin.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1 좌=1 원)
효력발생일	2022 년 8 월 3 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7 페이지) 및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4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액(i)	납입금액 50억이상 납입하는 법인만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
- 수사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

투자설명서 상세목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 B2 호	391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B8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AI91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 (법인전용 MMF)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 대상은 제2부"투자대상"과"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 B2 호	391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B8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AI91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3.11.17.	최초설정
2004.07.05.	약관변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 신법펀드로 전환)
2005.06.07.	약관변경 (LATE TRADING 적용)
2005.10.24.	약관변경 (감독규정 변경에 따른 약관변경)
2005.11.21.	약관변경 (법인전용 MMF 익일환매제시행에 따른 약관변경)
2006.07.01.	약관변경 (법인전용 MMF 익일입금제시행에 따른 약관변경)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2011.02.16.	집합투자업자사명변경, 잔존만기 5년 이내 국채증권 취득 한도 신설, 일반사무관리보수 신설 및 집합투자업자보수 인하, 재무재표확정에 따른 변경, 시행령 변경에 따른 변경 (이익분배, 50억미만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사항 및 수시공시반영, 업무보고서)
2012.07.10.	종류명 펀드로 변경(기존 “대신 국공채 신종 법인 MMF 제B2호”의 집합투자증권은 Class C 수익증권으로 변경되며 Class C-i는 신설),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보수인하, 투자제한 금융투자업개정사항 반영등
2013.05.23.	보수인하(집합투자업자 연 0.07%→연 0.03%, Class C-i 판매회사 연 0.05%→연 0.04%, 신탁업자 연 0.02%→ 연 0.01%), 투자대상자산 추가 (전자단기사채등),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2012.02.27 시행]에 따른 예금자보호안내문 관련 문구 수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채권평가회사 추가 (에프앤자산평가), 재무재표확정에 따른 업데이트등
2013.09.02.	운용전문인력 변경, 당사 자체 위험등급 기준 변경,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등
2014.02.04.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부책임운용역 추가, 정기 업데이트
2015.08.04.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 기업공시서식 변경 반영,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변경내용 반영, 신고업무 담당책임자 변경(최규철본부장 → 박재영본부장),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주소 정정,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6.02.29.	운용전문인력 변경(유태규전무, 송지연대리→송지연대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6.01.21)에 따른 요약정보 신설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5.07.08 시행, 2015.10.25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2015.01.01 시행, 2015.10.25 시행)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2016.01.25 시행)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16.7.1 시행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2016.11.03.	신탁업자변경(중소기업은행->한국증권금융),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6.12.23.	재무제표 업데이트,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등, 정기 갱신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0.05%->0.07%)
2018.05.30.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7.05.08 시행)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정기 갱신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0.07%->0.035%) -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본점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2018.09.21.	- 책임운용역 변경(송지연->김민규) - 기준일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18.12.21.	- 책임운용역 변경(김민규->김회현) -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정기 갱신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0.035%->0.019%)
2019.07.23.	- 집합투자기구 명칭변경(대신 국공채 <u>신종</u> 법인 MMF 제B2호->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B2호)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 9. 28 시행)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 1. 15 시행)
2019.09.18.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변경(2019.8.1)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2020.01.22.	- 결산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0.02% → 0.03%)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 9. 16 시행)
2021.01.21.	- 법시행령 제 130 조 제 2 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결산으로 인한 수익률변동성 변경 (0.03%-> 0.05%)
2021.04.13.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1.11.26	- 책임운용역 변경(김회현->정관욱) - 결산으로 인한 수익률변동성 변경 (0.05%-> 0.06%)
2022.02.25.	- 회계감사종료에 따른 재무제표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2.08.03.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대신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9 층(저동 1 가, 대신파이낸스센터) ☎ 02-769-3449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2022.07.12.기준)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MMF, 단위 : %)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정관옥	1968	책임 운용역 (상무)	6 개	7,802 억	-	-	1.22	0.96	20 년 7 개월

나. 운용전문인력 주요 이력

성 명	주 요 이 력
정관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 01.04 ~ 10.05 : 하나UBS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11.05 ~ 13.09 :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2팀 - 13.09 ~ 14.12 : 알파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팀 - 15.01 ~ 18.03 : 교보약사자산운용 채권운용1팀 - 18.03 ~ 21.08 : HDC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본부장 - 21.10 ~ 현재) 대신자산운용 채권멀티운용본부

주1) 이 투자신탁의 채권운용은 채권멀티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집합투자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정관옥	-	-

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없음

라.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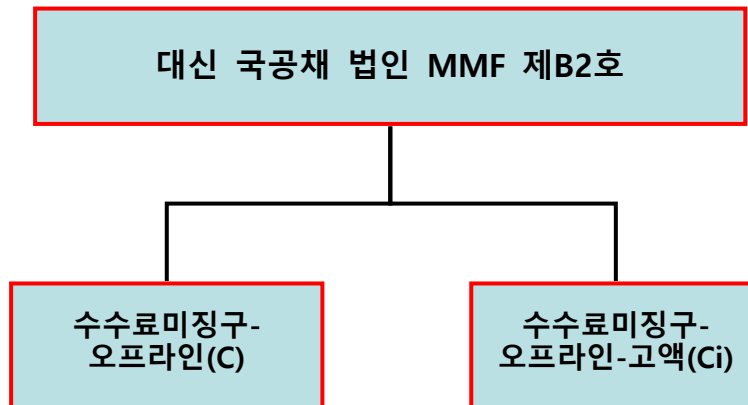
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비 고
송 지 연	2016.02.29. ~ 2018.09.20.	책임운용역
김 민 규	2018.09.21. ~ 2018.12.20.	책임운용역
김 회 현	2018.12.21. ~ 2021.11.25	책임운용역

정 관 옥	2021.11.26. ~ 현재	책임운영역
-------	------------------	-------

주1) 2022년 7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 MMF),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고액(i)	납입금액 50억이상 납입하는 법인만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단기금융 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이자수익 및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CD\text{금리} + 5 \times CALL) / 6$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채무증권 (국공채)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

	✓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u>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u>
어음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
집합투자증권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예치	✓ 만기 6월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단기사채 등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
양도성예금증서	✓ 잔존만기 6개월 이내
채권의 신용등급	✓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최상위 등급과 최상위등급의 차하위 등급. 그리고,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이내로 한정. ✓ 신용평가등급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능 -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증권 -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함)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기타	① <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u>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도성 예금증서, 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 71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 다. 법시행령 제 79조 제 2항 제 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 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② <u>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u> 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1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 3.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 <u>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무증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다.</u>
--	---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 동일종목 투자	1.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행위 가. 채무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어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5%).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의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가 가능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 동일거래 상대방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 대출한 금액 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1) 만기 30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4) 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
③ 환매조건부매도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는 행위
④ 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 가중평균잔존만기	<u>60</u> 일을 초과하는 행위
⑥ 파생상품 투자제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
⑦ 증권의 대여 및 차입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행위
⑧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⑨ 이해관계인 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⑩ 안정적자산비중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30%(안정적 자산 비중)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현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양도성 예금증서

	4. 영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영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6. 제 2 항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 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 2 항나목(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 안정적 자산 비중에 대한 적용은 2023 년 04 월 01 일부터로 합니다.
투자한도 제한의 예외	-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②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④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1) 신탁재산을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만기 1년이하)에 투자비율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
- (2) 채권 및 어음에의 투자는 부도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어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로 투자합니다.
- (3) 시장위험 회피를 위해 당해 투자신탁재산에서 편입하고 있는 자산 전체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60일 이하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 (4)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과 순절매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 비교지수 : (CD금리 + 5*CALL)/6

나. 수익구조

- 단기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이자 및 자본소득을 얻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 의 괴리 조정 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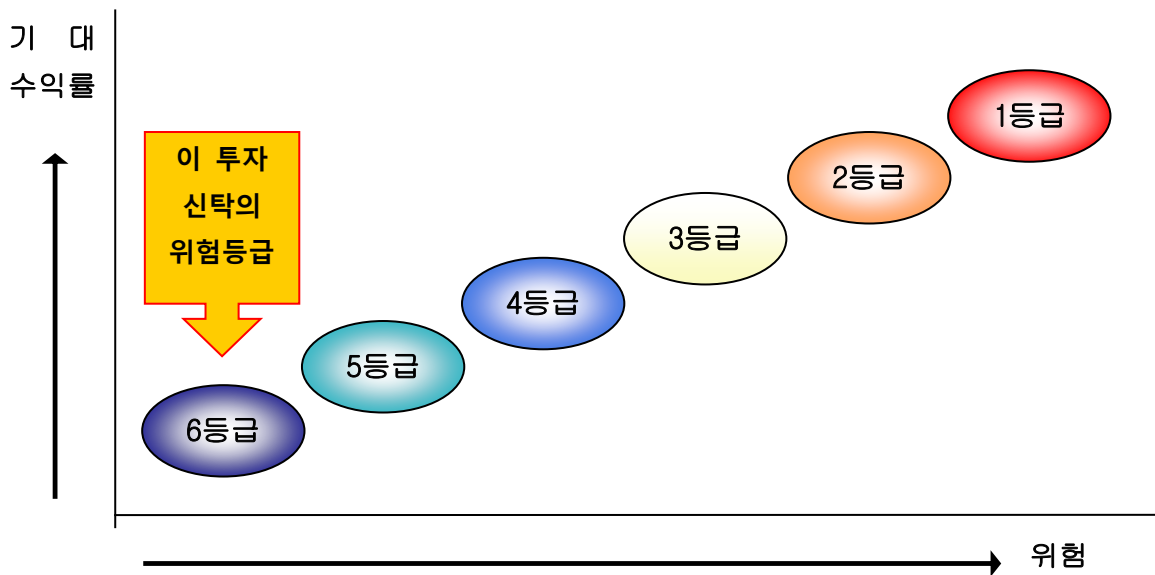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단기금융상품(Call, 예금 등)에 투자하는 MMF 투자신탁으로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 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시가형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가격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적습니다.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0.06%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편입비중이 이 투자신탁 보다 높은 주식형투자신탁이나 혼합형 투자신탁, 채권형 투자신탁 등에 비하여 낮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단기적 자금 운용과 단기금리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실지명의의 법인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

계량으로써,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대신자산운용(주) 투자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주1) 이 펀드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점검하고 변경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2)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고, 운용전략 등을 고려할 때 하위 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 등급을 하향합니다. (다만,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이 156주 이상인 경우에는 156주간만을 계산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이 155주인 경우 155주간만으로 적용)
- 주3) 추후 매 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모자형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5)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6)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간접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7)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주8) 레버리지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주9)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3)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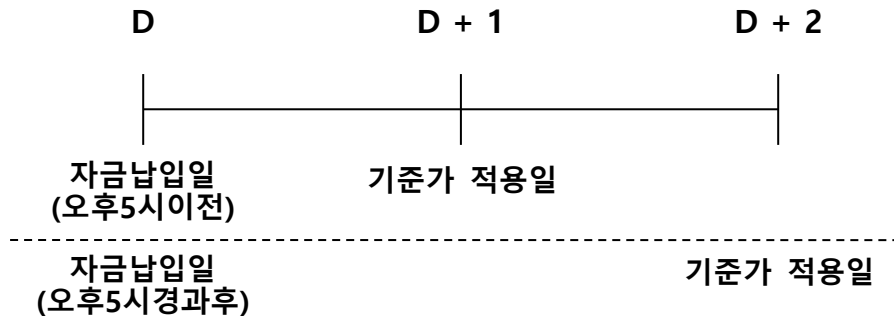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납입금액 50억이상

(4)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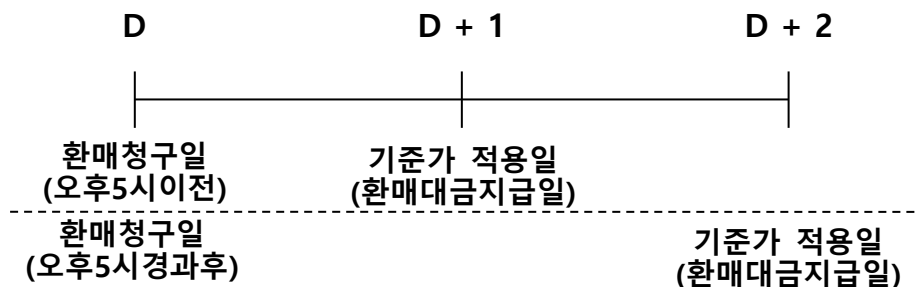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영업일(D+1)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D+2)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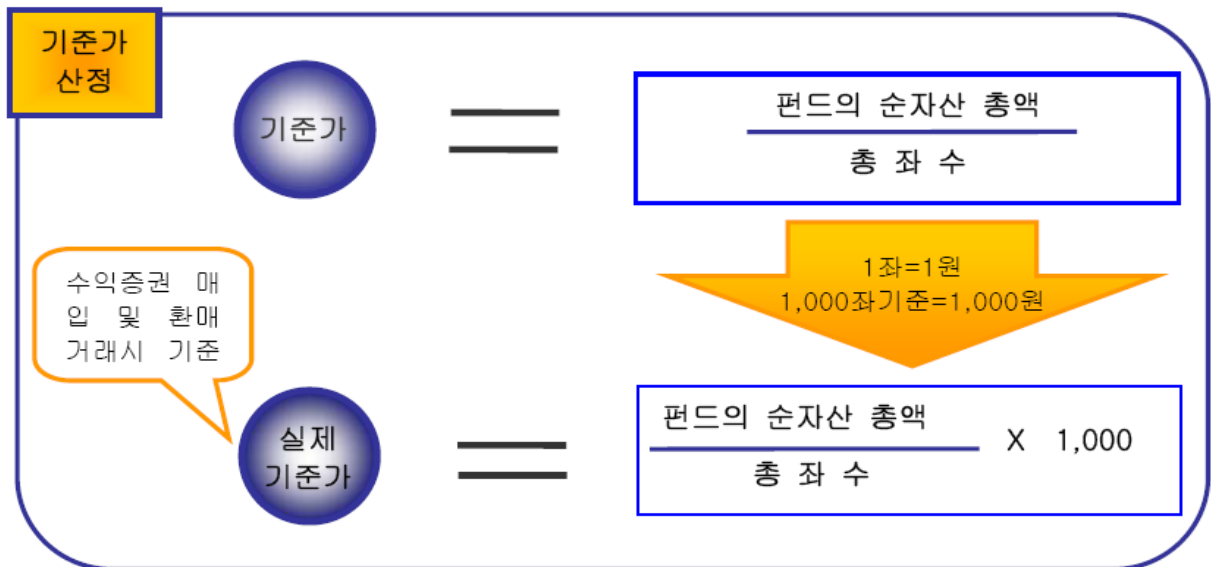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투자신탁(MMF)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방식에 의한 장부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	-------------------------------------

주)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 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시가평가 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납입금액 50억이상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0300	0.3100	0.0100	0.0100	0.3600	0.2000	0.0052	0.3652	0.3652	0.003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i)	0.0300	0.0400	0.0100	0.0100	0.0900	-	0.0052	0.0952	0.0952	0.0042
지급시기	매6개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0.11.17 ~ 2021.11.16]

※ 기타비용 종류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 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 원천납부세액)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0.11.17 ~ 2021.11.16]

※ 증권거래비용 종류 : 증권·선물·옵션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직전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증권거래비용	21,881,343
금융비용	-

주3)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C]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종류(클래스)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7	77	118	205	46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	37	77	118	205	463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	20	31	54	122

오프라인- 고액(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 총보수·비용 포함)	10	20	31	54	122
-----------------	------------------------------------	----	----	----	----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9 기(2021.11.17 - 2022.05.16)	회계기간미경과	해당없음
제 10기(2020.11.17 - 2021.11.16)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9기(2019.11.17 - 2020.11.16)	서우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통합재무상태표				
항 목		제 19 기	제 10기	제 9기
		(2022.05.16)	(2021.11.16)	(2020.11.16)
운용자산		718,902,209,549	361,706,748,493	565,383,522,923
	증권	718,811,481,695	351,670,944,864	545,227,641,27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0,727,854	10,035,803,629	20,155,881,65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731,146,997	932,976,922	1,458,961,742
자산총계		722,633,356,546	362,639,725,415	566,842,484,66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45,600,617	10,140,724,790	129,543,899
부채총계		145,600,617	10,140,724,790	129,543,899
원본		718,083,751,715	350,290,300,777	561,268,269,996
수익조정금		798,378,000	-1,047,219,915	447,218,194
이익잉여금		3,605,626,214	3,255,919,763	4,997,452,576
자본총계		722,487,755,929	352,499,000,625	566,712,940,766
통합손익계산서				
항 목		제 19 기	제 18기	제 17기
		(2021.11.17 - 2022.05.16)	(2020.11.17 - 2021.11.16)	(2019.11.17 - 2020.11.16)
운용수익		3,932,196,572	3,859,199,058	5,626,769,369
	이자수익	-281,292,093	-1,432,115,357	-1,264,985,594
	배당수익	-281,292,093	-1,432,115,357	-1,264,985,594

	매매/평가차익(손)	-281,292,093	-1,432,115,357	-1,264,985,59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260,146,683	501,091,932	513,184,978
	관련회사 보수	260,146,683	501,091,932	513,184,978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66,423,675	102,187,363	116,131,815
당기순이익		3,605,626,214	3,255,919,763	4,997,452,57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주3) "통합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목	제19기(2022.05.16)		제18기(2021.11.16)		제17기(2020.11.16)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90,727,854		10,035,803,629		20,155,881,651
1. 현금및현금성자산	90,727,854		62,558,318		155,881,651	
2. 예치금			9,973,245,311		20,000,000,000	
3. 증거금						
대출채권		369,300,404,410		166,247,206,073		310,011,456,495
1. 콜론						
2. 판매조건부채권매수	152,500,000,000		52,200,000,000		136,000,000,000	
3. 매입어음	216,800,404,410		114,047,206,073		174,011,456,495	
4. 대출금						
유가증권		349,511,077,285		185,423,738,791		235,216,184,777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49,511,077,285		185,423,738,791		235,216,184,777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731,146,997		932,976,922		1,458,961,742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3,731,146,997		932,976,922		1,458,961,742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722,633,356,546		362,639,725,415		566,842,484,665
부 채						
운 용 부 채						
1. 운선매도						
2. 판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45,600,617		10,140,724,790		129,543,899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0,017,500,000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145,600,617		123,224,790		129,543,899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45,600,617		10,140,724,790		129,543,899
자 본						
1. 원 본	718,083,751,715		350,290,300,777		561,268,269,996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익잉여금	4,404,004,214		2,208,699,848		5,444,670,770	
(발행과수 당가: 718,083,751,715 좌						
전가: 350,290,300,777 좌		3,605,626,214		3,255,919,763		4,997,452,576
전전가: 561,268,269,996 좌)		수익조정금 798,378,000		-1,047,219,915		447,218,194
(기준가격 당가: 1,006.63 원						
전가: 1,000.00 원						
전전가: 1,000.00 원)						
자 본 총 계		722,487,755,929		352,499,000,625		566,712,940,76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22,633,356,546		362,639,725,415		566,842,484,665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19기(2021.11.17-2022.05.16)		제18기(2020.11.17-2021.11.16)		제17기(2019.11.17-2020.11.16)	
	금 액		금 액		금 액	
1. 투자수익		4,213,488,665		5,291,314,415		6,891,754,963
1. 이 자 수 익	4,213,488,665		5,291,314,415		6,891,754,963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7,477,699		175,860,883		709,026,016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24,827,040		116,898,147		272,267,975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체채권매매/평가차익	2,650,659		58,962,736		436,758,041	
7. 기타거래차익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08,769,792		1,607,976,240		1,974,011,61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281,602,132		1,555,338,796		1,820,168,986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체채권매매차손	27,167,660		48,096,855		153,638,460	
8. 기타거래손실			4,540,589		204,164	
운 용 비 용		326,570,358		603,279,295		629,316,793
1. 운용수수료	85,117,589		158,435,935		170,850,544	
2. 판매수수료	146,656,438		289,843,587		285,383,757	
3. 수탁수수료	28,372,656		52,812,410		56,950,677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66,423,675		102,187,363		116,131,815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605,626,214		3,255,919,763		4,997,452,576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05021178		0.009294918		0.00890385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운용펀드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1.11.17 - 2022.05.16	3,500	3,500	13,361	13,401	9,682	9,713	7,179	7,226
2020.11.17 - 2021.11.16	5,608	5,608	27,391	27,474	29,499	29,594	3,500	3,526
2019.11.17 - 2020.11.16	3,741	3,741	39,552	39,820	37,685	37,948	5,608	5,668

(주1) 2020.11.17 - 2021.11.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174,976,183좌/2,174,976,183원

(주2) 2019.11.17 - 2020.11.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145,356,218좌/5,145,356,218원

(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1.11.17 - 2022.05.16	247	247	414	415	442	443	219	220
2020.11.17 - 2021.11.16	208	208	1,267	1,269	1,228	1,230	247	248
2019.11.17 - 2020.11.16	189	189	737	740	718	721	208	210

(주1) 2020.11.17 - 2021.11.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8,096,692좌/88,096,692원

(주2) 2019.11.17 - 2020.11.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0,002,384좌/140,002,384원

(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1.11.17 - 2022.05.16	3,256	3,256	12,924	12,960	9,218	9,245	6,962	7,005
2020.11.17 - 2021.11.16	5,404	5,404	26,077	26,145	28,226	28,304	3,256	3,277
2019.11.17 - 2020.11.16	3,565	3,565	38,770	39,015	36,931	37,171	5,404	5,457

(주1) 2020.11.17 - 2021.11.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086,879,491좌/2,086,879,49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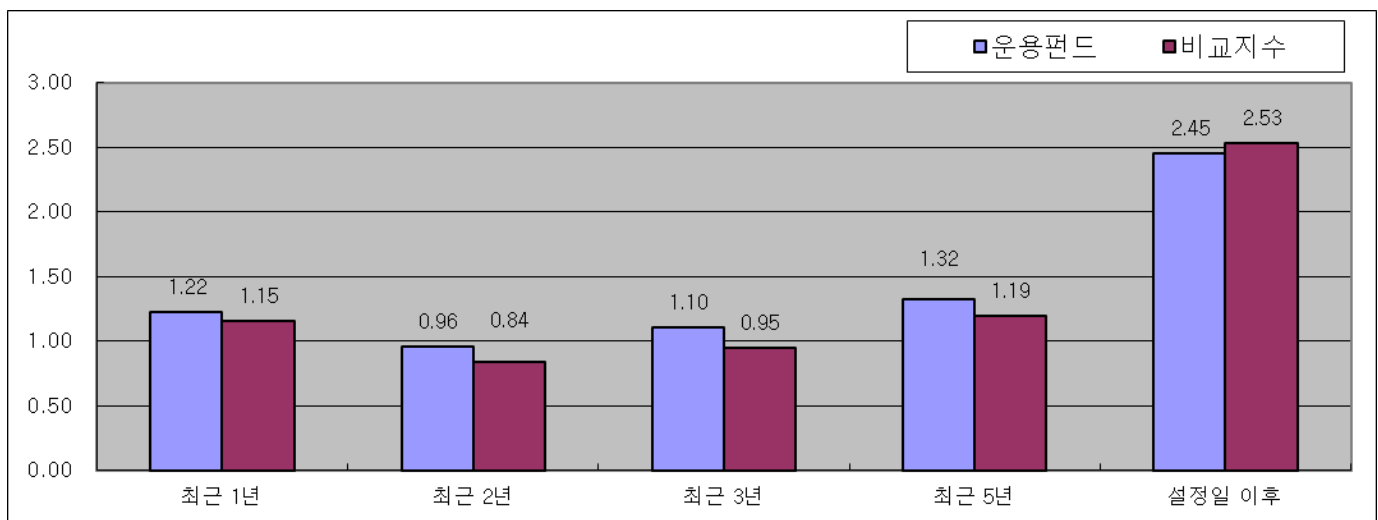
(주2) 2019.11.17 - 2020.11.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005,353,834좌/5,005,353,834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1.07.13 ~ 22.07.12	20.07.13 ~ 22.07.12	19.07.13 ~ 22.07.12	17.07.13 ~ 22.07.12	03.11.17 ~ 22.07.12
운용펀드	1.22	0.96	1.10	1.32	2.45
비교지수	1.15	0.84	0.95	1.19	2.53
수익률변동성(%)	0.05	0.05	0.05	0.06	0.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85	0.59	0.74	0.96	2.25
비교지수	1.15	0.84	0.95	1.19	2.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1.13	0.87	1.01	-0.78	0.42
비교지수	1.15	0.84	0.95	-0.79	0.40

주1) 비교지수 : (CD금리 + 5*CALL)/6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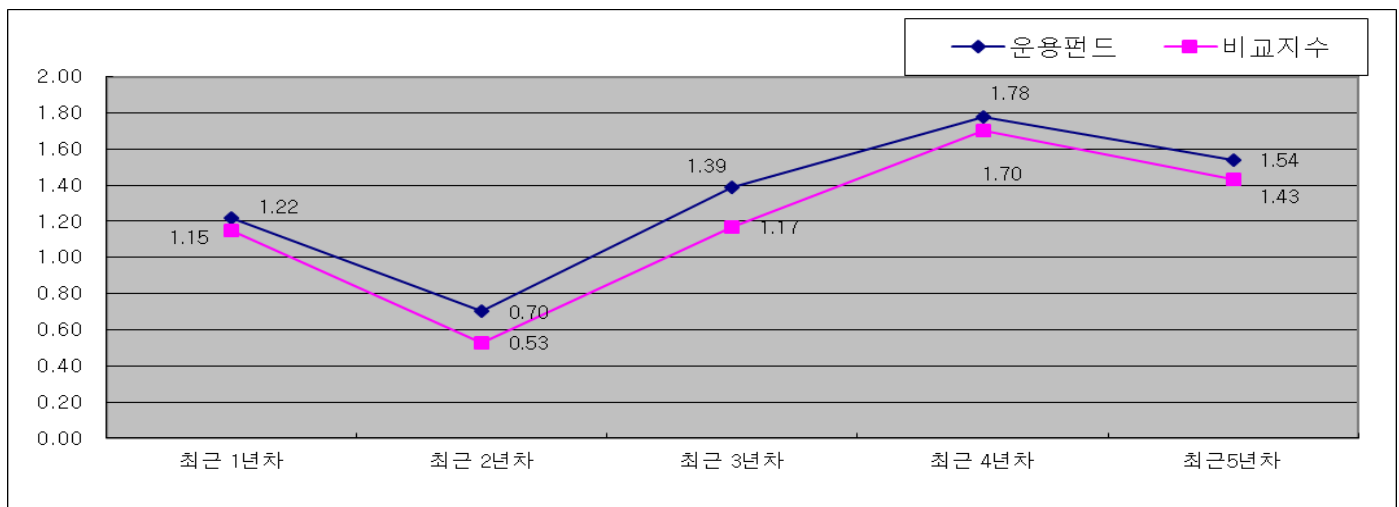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1.07.13 ~ 22.07.12	20.07.13 ~ 21.07.12	19.07.13 ~ 20.07.12	18.07.13 ~ 19.07.12	17.07.13 ~ 18.07.12
운용펀드	1.22	0.70	1.39	1.78	1.54
비교지수	1.15	0.53	1.17	1.70	1.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85	0.34	1.03	1.42	1.17
비교지수	1.15	0.53	1.17	1.70	1.4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Ci)	0.76	0.81	1.61	-8.09	1.33
비교지수	0.73	0.67	1.58	-8.00	1.32

주1) 비교지수 : $(1 * ([CD금리] + 5 * [CALL금리]))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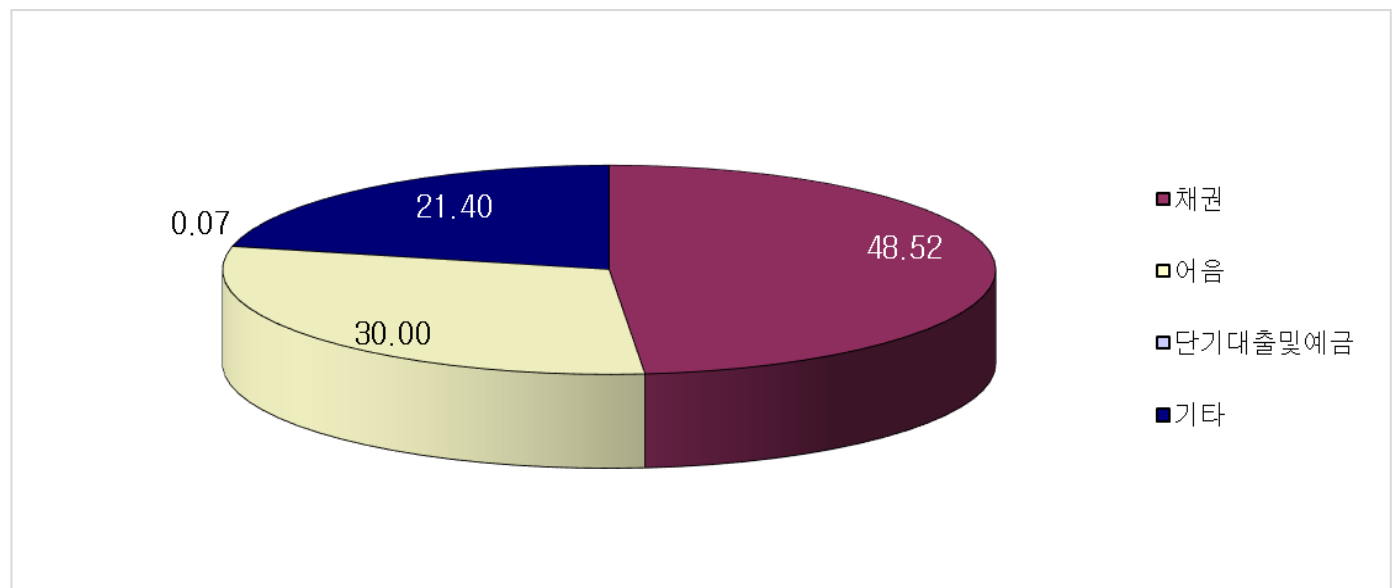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2.05.16.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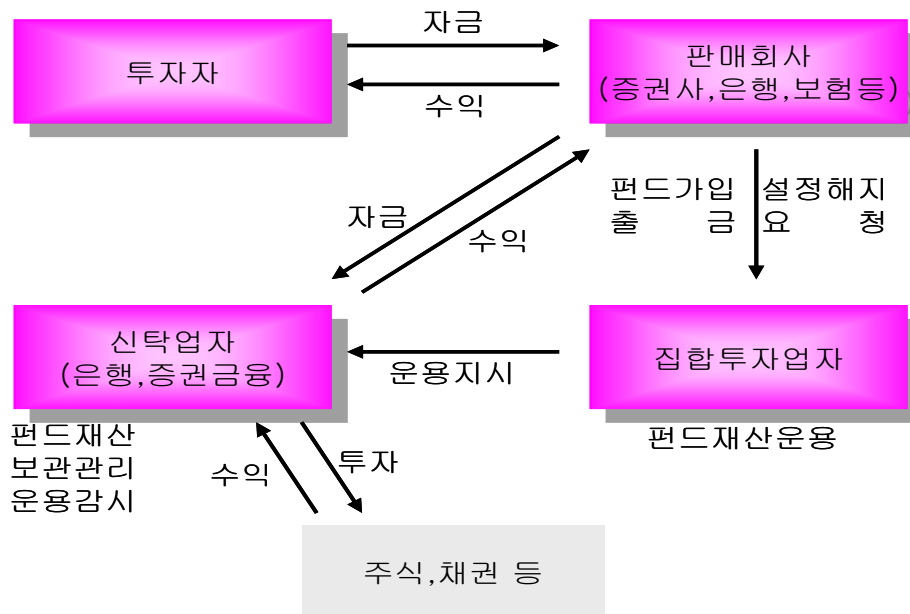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3,506	2,168	0	0	0	0	0	0	5	1,547	7,226
	(0.00)	(48.52)	(3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7)	(21.40)	(100.00)
합계	0	3,506	2,168	0	0	0	0	0	0	5	1,547	7,226
	(0.00)	(48.52)	(3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7)	(21.40)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대신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9층(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연락처 : 02-769-3449, asset.daishin.com)
회사 연혁	1988. 3 대신투자자문(주) 설립 (납입자본금 10억원) 1988. 4 투자자문업 등록(재무부 등록번호 제8호) 1996. 6 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1996. 7 대신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 1997. 7 투자신탁운용업 허가(주식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1997. 7 공사채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1999.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겸영 인가(재정경제부) 2009. 6 140억 증자(납입자본금 440억) 2009. 8 280억 감자(납입자본금 160억) 2010. 5 대신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 2012. 6 130억 증자(납입자본금 290억) 2013. 3 한국창의투자자문(주)흡수합병 2016.12 본점 소재지 변경(여의도->명동) 2021. 1 본점 소재지 이전
자본금	290억
주요주주현황	대신증권(주) (100 %)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1.12.31	2020.12.31	계정과목	21.01.01 ~ 21.12.31	20.01.01 ~ 20.12.31
현금 및 예치금	19,855	31,207	영업수익	27,729	14,801
유가증권	30,481	7,469			
대출채권	112	147			
유형자산	4,288	521	영업비용	13,582	11,399
무형자산	0	62			
기타자산	4,714	2,509	영업이익	14,147	3,402
자산총계	59,450	41,916	영업외수익	15	179
기타부채	7,598	1,552	영업외비용	546	259
부채총계	7,598	1,552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13,616	3,322
자본금	29,000	29,000	법인세비용	1,245	284
자본잉여금	4,394	4,394			
이익잉여금	18,398	6,955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60	15			
자본총계	51,852	40,364	당기순이익	12,371	3,038

라. 운용자산 규모

(2022.07.12. 현재 /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및 혼합자산 파생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재간접					
수탁고	3,824	1,132	15,559	4,484	1,030	2,575	334	10,374	4,391	43,70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0(여의도동) ☎ 3770-88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www.ksfc.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상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 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 02-2180-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www.shinhanaitas.com
------------------------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 I C E 피앤아이(주)	KIS자산평가	(주)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 구 율곡로 88 삼 환빌딩 4층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 하빌딩 4층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 화재 보험협회빌딩 4층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 빌딩 4층 ☎ 02-721-5353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의무 및 책임

(1)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①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②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③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하기 위한 사항

(2) 법 제264조제2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채권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5.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6.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7.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합병·분할·분할합병
10.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12.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13.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1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 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 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라.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③호 및 ④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소 및 관리 정책

-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 이행실적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합니다.

▶ 발생 사전 억제 정책

-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시 판매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설정 시부터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6개월간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 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집합투자기구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 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5)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6)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asset.daishin.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 ·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 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4월30일까지 직전 연도4월1일부터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대신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채권	91,503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투자금융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